

☑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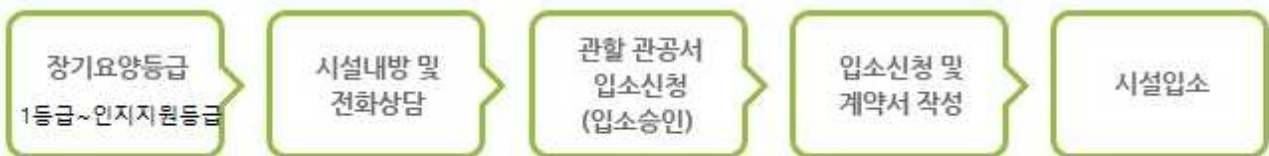
입소절차

▶ 주간보호센터 입소방법

일반 어르신



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



※ 수급권자의 경우 지자체 관할 구역 안에서 시설입소 가능.

※ 타지역 입소 시 지자체 간의 협약이 별도로 체결되어야 하므로 입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▶ 주간보호센터 입소절차



① **계약목적** : 입소 이용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(시설)와 대상자(보호자)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.

② **계약기간** : 계약기간은 계약기간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정함.

- 1) 서비스 이용 전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, 급여이용 및 제공, 계약자의무, 계약의해지 개인정보보호, 그 외 센터 이용 시 필요 서류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- 2)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수용하며, 계약해지 일자까지 이용비용을 정산하여 수급자(보호자)에게 알려주고, 수급자(보호자)는 비용을 정산해야함

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(2019.01.01)

○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(원)

구 분	장기요양 1등급	장기요양 2등급	장기요양 3등급	장기요양 4등급	장기요양 5등급	인지지원 등급
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	34,120	31,590	29,160	27,830	26,500	26,500
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	45,740	42,370	39,110	37,780	36,440	36,440
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	56,890	52,710	48,660	47,330	45,980	45,980
10시간 이상 ~ 12시간 미만	62,680	58,060	53,640	52,290	50,960	45,980
12시간 이상	67,210	62,270	57,520	56,190	54,850	45,980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1,456,400	1,294,600	1,240,700	1,142,400	980,800	551,800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구분	재가급여
일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60% 경감자 - 기타의료급여자(기초생활수급자 제외) - 차상위감경대상자(희귀난치성 또는 만성질환자) -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 생계곤란자 - 보혈로감경대상자(보혈료순위 25% 이하인자)	6%
40% 경감자 보혈로감경대상자(보혈료순위 25% 초과 50% 이하인자)	9%

○ 토요일, 공휴일 가산비율 30%

☒ 비급여 부담액 (자비부담)

- 1) 식비 (간식 비 포함) : 일 4,000원 1일1식(점심) 및 간식 포함. (오전, 오후 각 1회)
[상기 비용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]

☒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- 1)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%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- 2) 외출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 : 자원연계 한방진료비, 병원동행 진료비 수급자의 직접 비용 지불 하여야함.